

	정원조정에 관한 규정		문서번호	3-4-16		
			제정일	2015. 12. 23		
			개정일			
			페이지	1/1	관리 부서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정원조정”이란 본 대학의 학칙 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에 규정된 입학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정원조정 기준) 정원조정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.

- ①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
- ②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결과 이행
- ③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의 수행

제4조(정원조정 절차) 입학정원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.

1. 정원조정 계획 발의
2. 정원조정 구성원 의견수렴
3. 교무위원회 보고
4. 대학평의위원회 심의
5. 이사회 심의

제5조(경과조치 규정) 이 규정에 의하여 모집단위 조정에 따른 사항은 학칙의 경과조치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